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사모펀드 개편안 시행

채희석 변호사

1. 주요 내용

2015년 10월 25일부터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도의 전반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지평 뉴스레터 8월호 \[최신법령 - 자본시장\]](#) 참조).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이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잇달아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과 3억 원으로 설정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

자본금 20억 원,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3)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연간 보고로 완화

(4)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 (안 제271조의14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

(5) 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

(6) 거래소 손해배상 총담금 자원 순서 변경(안 제362조)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총담할 자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금,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

나.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규정 : 등록신청서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서 흠결 등을 보완하는 기간 등은 2개월의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

2. 다운로드 :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